

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(제6조 관련)

1. 제조검사 대상

- 가. 갑문본체 : 상·하부 대차를 포함한다.
- 나. 갑문구동장치 :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.
- 다. 충수(充水)설비 :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.
- 라. 취수·배수설비 : 취수·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.
- 마. 컨테이너 크레인(Container Crane)
- 바. 트랜스퍼 크레인(Transfer Crane) : 타이어식 또는 레일식을 포함한다.
- 사. 십로더(Ship loader) 및 십언로더(Ship Unloader)
- 아. 스택커 리클레이머(Stacker Reclaimer)
- 자. 벨트 컨베이어(Belt Conveyor) : 항만시설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차. 다목적 크레인(Multipurpose Crane) : 레벨러핑 크레인(Level Luffing Crane) 및 브리지타입 크레인(Bridge Type Crane)을 포함한다.

2. 설치검사 대상 : 로딩암>Loading Arm) 및 탑승교(Passenger Boarding Bridge)

3. 정기검사 대상 :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. 다만, 영 별표 4 제9호·제10호 및 제 15호에 따른 리치스테커, 야드 샐시 및 모빌하버 크레인은 제외한다.

4. 수시검사 대상

- 가.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 : 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
 - 나.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: 영 별표 4에 따른 시설장비
- 비고 : 영 별표 4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는 그와 유사한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에 따른다.